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7
------------	------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의자 : 이용호 · 김관영 · 조배숙  
정인화 · 장정숙 · 주승용  
남인순 · 소병훈 · 김광수  
황주홍 · 김삼화 · 박선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과 병행하거나 전승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승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이수증”을 “이수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를 “심사, 제2항에 따른 우수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전수교육 <u>이수증</u>) ① (생 략) <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u>심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전수교육 <u>이수증 발급 등</u>)  <u>①</u> (현행과 같음)  <u>②</u> 문화재청장은 이수자 중에 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 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 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 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③</u> -----  -----<u>심사</u>, 제2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p>